의안번호	2213149
의 뢰 인	김용태의원
회 답 일	2025.10.29
추계번호	25C5224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・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,000만원, 2030년 7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 5,000만원(연평균 7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인터넷 이용 결혼중개 표시・광고 모니터링 (안 제12조의2)	70	70	70	70	70	350	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2(인터넷 표시・광고 모니터링)	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・광고가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(제1항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4항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2조의2(인터넷 표시 · 광고 모니터링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 · 광고가 제12조[1]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, 관련 사업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❑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비로 매년 7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
○ 성평등가족부는 국제결혼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, 2025년도에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해 6,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---

1) **제12조(거짓·과장된 표시·광고의 금지 등)**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·과장되거나 국가·인종·성별·연령·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·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,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제1항에 따른 거짓·과장된 표시·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[표 2]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인터넷 이용 결혼중개 표시·광고 모니터링 (안 제12조의2)	70	70	70	70	70	3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